24. 12. 16. 오후 2:35 인쇄

# 병적별도관리제도란

#### 개요

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'공직자·체육선수·대중문화예술인·고소득자'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#### 관리 대상

- 공직자 :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
- 체육선수
- 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
  - 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
- 3. 1, 2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
- 4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○ 대중문화예술인: 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
  - ☞ 병적별도관리 신고(대중문화예술인 및 체육선수)(바로가기)
- 고소득자 : 「소득세법」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사람과 그 자녀

#### 관리 기간

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때(18세)부터 현역·보충역·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

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역이행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,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## 병적 별도관리 선정 제외 신청

관리대상은 해당기관/단체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공직생활 퇴직, 체육선수 미등록,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해지 등 신상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귀하께서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병적 별도관리 제외 신청을 하시면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.

☞ 병무청누리집  $\rightarrow$  병무민원  $\rightarrow$  민원안내  $\rightarrow$ 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  $\rightarrow$  `병적 별도관리 선정 제외신청' (<u>바로가기</u>)

###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번호

지방청	부서	전화번호
서울지방병무청	병역조사과	02-820-4341,3
경인지방병무청	병역조사과	031-240-7432

24. 12. 16. 오후 2:35인쇄

지방청부서전화번호대구경북지방병무청병역조사과053-607-6436